# 배움의 윤리

("2017 서울대 새내기 기초교양 교육과정 길잡이"를 바탕으로)

## 배움의 윤리

- 학부교육의 초점은 학문을 하는 기초능력을 기르는 것
  -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탐구
  - 결과를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표 현력을 함양
  - 정직하고 성실한 학습과정을 통해 자발적인 학습능력 배양
- 시회에서 창의적인 인재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
  -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요구됨
  - 학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연구윤리가 요구됨

#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: 표절

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, 실험결과, 통계자료, 도표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 위

- 표절의 예
  - 출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
  - 출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료(도표, 그림, 통계 등)를 사용하는 경우
  - 원전과 다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특정인의 연구방법, 논리전개, 문장구조를 모방하는 경우
  - 진위 여부에 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적·사회적·자연적 현상을 출전을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
  - 출전을 밝히지 않고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서 짜깁기를 한 경우

##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: 자료위조

 본인이 직접 실험이나 연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실험 이나 연구를 수행한 것처럼 자료의 전체나 일부를 허 위로 조작하여 과제물을 작성·제출하는 경우

#### • 자료위조의 예

- 실험, 설문, 답사, 통계 등의 경험 자료를 위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는 경우
- 사상, 이론, 문학작품 혹은 예술작품 등의 문헌자료 혹은 대상작품을 위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는 경우

#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: 자료변조

• 필요한 연구과정을 수행했지만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, 그 전체 혹은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과제물을 작성·제출하는행위

#### • 자료변조의 예

- 실험, 설문, 답사, 통계 등의 경험 자료를 변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는 경우
- 사상, 이론, 문학작품 혹은 예술작품 등의 문헌자료 혹은 대상작품을 변조하여 과제물을 작성하는 경우

####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: 자기복제와 중복제출

 다른 과목에서 제출한 과제물의 일부나 전체를 다시 제출하거나,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물을 두 과목 이 상에 제출하는 경우

- 자기복제와 중복제출의 예
  - 전문(全文)을 중복 제출하는 경우
  - 구성이나 문장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
  - 서론이나 결론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
  - 두 개 이상의 글을 하나의 글로 합쳐서 제출하는 경우
  - 자료와 내용의 보완 없이 일부를 완성된 과제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

####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: 무임승차

 말 그대로 공동실험이나 공동연구 및 학습 과정에 참 여하지 않고 공동 과제물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행 위

- 무임승차의 예
  - 연구 과정과 과제물 작성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
  - 개별 과제물을 공동으로 작성한 것처럼 각자 제출하는 경우

##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 : 과제물 구매 및 양도

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과제물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과제물을 그대로 베끼거나 변조하여 제출하는 해위,

• 자신의 과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

 참고로, 하버드 대학은 과제물 작성을 도와주는 학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학칙에 명시하고 있음

#### 배움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: 시험 부정행위

시험에서 남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

- 담당교수의 허가 없이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
- 대리시험을 부탁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
- 다른 사람이 과제물(창작 전시물 등도 포함)을 훼손하는 행위

####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

제2조(징계사유 및 징계권자)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서울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.

- 1.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
- 2.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
- 3.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
- 4.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
- 5.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
- 6. 학내에서 폭력, 폭언을 행사하거나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
- 7. 학내 컴퓨터·통신망·데이터·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
- 8.「서울대학교성희롱·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
- 9. 학칙 등 제규정(각종 규범 포함)을 위반한 자
- 10.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

## 컴퓨터공학부의 학생징계 절차 및 종류

- 절차
  - 징계사유 해당자 통보 → 경위서 제출 및 교수 면담
  - → 컴퓨터공학부 학사위원회 심의 (학생 본인 출석 및 소명)
  - → 공과대학으로 위임요청 → 공과대학 징계 위원회 심의
- 징계 종류 (근신 이상의 처분은 학적부 기록)
  - 사회봉사 (교·내외 봉사활동 시간이 결정됨)
  - 근신 (7일 이상 1월 이하)
  - 정학: 유기정학, 무기정학 (1월 이상)

## 징계사례

- (사례 1)
  - 사건 : (부정행위) 전공 시험 중 두 학생이 협의하여 답안을 보여 줌.
  - 징계 처분 : 유기정학
- (사례 2)
  - 사건: (위조 및 조작) 수강신청취소원의 지도교수 서명란을 본인이 작성하고, 이를 숨기기 위해 교수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이메일 내용 조작
  - 징계 처분 : 사회봉사 70시간
- (사례 3)
  - 사건 : (문서 위조) 전공 수업 결석 사유를 제출하기 위해 병원진단서 위조하여 제출.
  - 징계 처분 : 유기정학 3개월
- (사례 4)
  - 사건 : (절도) 본인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고의적으로 타인의 것과 교체 함.
  - 징계 처분 : 사회봉사 80시간

## 지양하는 바

#### 여기 태워 올리는 어둠의 아성이

(인터넷에서 발췌)

정의와 선

그 누가 한국사회의 병폐를 묻거든 눈 들어 관악(冠岳)을 보게 하라.

• • •

겨레의 뜻을 기회로 활용한 이 날 누가 조국이 망해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. 민족의 위대한 상속자를 자처하며 아 기리 빛날 우리만의 서울대학교 타오르는 어둠의 권력욕에 갇혀 있으니 누가 망국의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.